

2002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2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3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자활 및 생활 안정 도모

3. 기금의 운용

- 지급대상
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영세농어민의 자녀,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
- 장학금의 종류
 - 특별장학생
 - 소년소녀가장·세대원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추진에 모범이 된 자
 - 일반장학생
 - 특별장학생지급대상자 이외의 자
-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	중 학 생			고 등 학 생		
	대상인원	지급총액	대상인원	지급금액 (인/년)	지급총액	대상인원	지급금액 (인/년)	지급총액
계	27	10,000	15		4,800	12		5,200
특별장학생	5	2,400	3	400	1,200	2	600	1,200
일반장학생	22	7,600	12	300	3,600	10	400	4,000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1991년도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의 목적에 따라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으며,
-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적립원금 110,000원과 적립원금이자 7,313천원, 기금운용예탁금 9,487천원, 기금운용예탁금이자 168천원, 합계 126,968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27명을 선발하여 2002년도 상·하반기 각 1회씩 10,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기금운영을 조례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
- 금후, 기금예치상황, 장학생선발심사기준, 장학생 선정방법, 자금관리방법, 금리 하락에 대한 장기 발전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의 적립원금 이자수입으로는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27명의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
- 답 : 2003년도부터 국·도비지원 또는 군비 등으로 원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